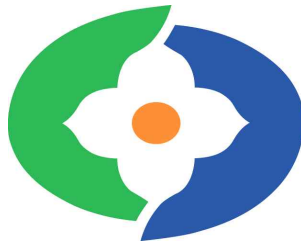


2018년도  
국악문화체육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기 획 감 사 담 당 관 )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10. 29. ~ 11. 2. (5일간)
- 대상기관 : 국악문화체육과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10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1건
  - 행정상 조치 : 11건(주의 5, 시정 5, 개선요구 1)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7,278,84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인 『소소한 농가 와이너리 투어』가 산업관광 콘텐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와인 1번지로써 영동군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5개팀	11건 (문화예술 4, 관광 3, 국악진흥 1, 체육진흥 1, 공통 2)	주의 5 시정 5 개선요구 1		회수 4건 7,278,840원
1	문화예술	◦ 불용품 매각처분조서 작성 소홀	주의		
2		◦ 신용카드 사용 및 재정사항 합의 절차 소홀	주의		
3		◦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3,314,000원
4		◦ 민간경상보조사업(책자발간) 공통기준 미비 및 업무처리 소홀	개선요구		
5	관 광	◦ 조경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시정		
6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이행	주의		
7		◦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3,075,000원
8	국악진흥	◦ 난계국악단원 연주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390,000원
9	체육진흥	◦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시정		회수 1건 499,840원
10	문화예술 관 광 국악시설	◦ 일상경비 집행의뢰 소홀	주의		
11	문화예술 국악진흥 체육진흥	◦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불용품 매각처분조서 작성 소홀

【현 황】

물품명	규격	소요조회	불 용 결정일	처 분 방 법	매각금액 (원)	처분일	매수인	비 고
냉방기	냉방기, 엘지전자, LS-C082B, 3.2KW, 벽 걸이형 외 실외기 1	2016.3.14	2016.4.5.	매각	20,000	2016.4.6.	OOOO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불용품의 매각)에 따르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매수인이 없을 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하며,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간주되며, 물품 출납명령이 없으면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출납을 할 수 없다.
-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2016년 3월 14일 냉방기 불용 결정시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을 하여야 함

에도 매각처분조서 작성을 하지 않은 채 ○○○○의 견적금액 20,000원에 매각 인도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불용품 매각시 영동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처분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재정사항 합의 절차 소홀

### 【현 황】

○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보고

발급일자	카드번호	용도	사용내역보고여부
2014.01.03.	-	유류구매카드	부
2014.01.03.	-	유류구매카드	부
2016.01.26.	-	신용카드결제 및 급식비결제계좌	부
2016.01.26.	-	신용카드결제 및 급식비결제계좌	부

○ 카드사용내역 미공개 및 재정사항 합의 미이행

구분	사용일	사용금액	사유	사용처	홈페이지등 공개여부	재정합의여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7.08.01	500,000	☆☆☆☆ ☆☆☆☆에 따른 지역 특산품 구입 및 제공	◇◇◇◇	미공개	부 (재무과장 협조 미이행)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담당자는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

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행정복지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위 현황의 법인카드에 대해 감사시점인 2015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카드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8월 1일 “☆☆☆☆ ☆☆☆☆에 따른 지역 특산품 구입 및 제공” 명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 지출하였음에도 카드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지출품의시 재무과장의 재정사항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리팀장의 협조만 거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기 바라며,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재정사항 합의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314,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 부적정

### 【현 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 △△△△△ △△공사	★★건설(주) ○○○	15.09.24	15.10.01 ~ 16.09.19	948,909	945,595	3,314	

### 【위법부당내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2012.3.1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 ▶ 그런데도 2015. 09. 24 ★★건설(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 △△△△△ △△공사」에 대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상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 정산하여 3,31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 △△△△△ △△공사」 도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공사 보험료 3,314,00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시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납부금액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경상보조사업(책자발간) 공통기준 미비 및 업무처리 소홀

### 【현 황】

○ 지원내역 및 산출내역 현황

(단위: 천원)

년도	보조 사업자	지원내역		원고료		산출내역	비고
		사업명	지원액	당초계획액	실제집행액		
2015	-	-	35,000	3,000	7,680	- 한자포함 15천원/P - 한글원고 5천원/P - 분량 : 512P	명시이월
2016	-	-	50,000	2,500	2,656	- 3천원+α/P - 분량 : 800P	명시이월
2016	-	-	15,000	2,400	4,200	- 별도 산출내역 없음 - 분량 : 200P 내외 - 자부담포함	명시이월
2016	-	-	40,000	4,000	3,000	- 5천원+α/P - 분량 : 300P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	-	40,000	16,000	9,600	- 16천원/P - 분량 : 600P	명시이월
2017			10,000				
2017	-	-	50,000	7,500	3,795	- 별도 산출내역 없음 - 분량 : 1,200P - 사업진행중	명시이월
2017	-	-	50,000	2,000		- 별도 산출내역 없음 - 사업진행중	명시이월
2017	-	-	8,500	1,200		- 6명×200천원 - 사업진행중 - 자부담포함	정산 및 이월내역 확인 불가
2018	-	-	30,000	2,000		- 2명×1,000천원 - 사업진행중	명시이월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금사본,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정산보고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2조(정산검사)에 따라 군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II.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및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II. 지방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사업계획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을 제출받아 담당부서에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 심사하여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 발간사업 외 8건의 책자 발간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료 등의 경비를 보조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지급단가를 통일한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이나 검토 없이 상기 지원내역 및 산출내역 현황(별도산출내역이 없거나 최대 ◇◇◇◇편찬사업 16천원/P에서 최소 ☆☆☆☆편찬사업 3천원+ $\alpha$ /P 등)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정산검사하여 보조금을 지급 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 등 책자발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원고료 등의 경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조경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현 황】

공 사 명	사 업 량	공사비(천원)			추진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 및 □□□ ○○공사	A=23,094㎡	278,203	272,974	5,229	18.05.21 ~ 18.06.25	□□건설(주) ○○○	

【위법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그런데 감사일인 2018. 11. 2.에 위 공사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자보증기간(2018. 6. 25. ~ 2020. 6. 26.)내에 있는 “☆☆☆(△△△) □□ 및 □□□ ○○공사” 내 수목(느티나무) 41주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고사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서면통지)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 이행통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 □ □ 및 □□□ ○○공사” 의 고사된 조경수에 대하여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이행

【현 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공사금액(천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 △△△△ ◇◇◇◇◇ ☆☆☆공사	□□건설주 ○○○	17.12.12	17.12.18 ~ 18.12.31	414,968	242,888	172,080	

【위법부당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 제32조의 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 그런데도 17. 12. 12 □□건설(주)○○○과 계약하여 추진중인 「○○○ □□□□□~ △△△△ ◇◇◇◇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자가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 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였어야 함에도 감사 일 현재(2018. 11. 2.)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공사 착공계 접수시 도급자가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 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075,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 【현 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계(2건)						3,075	
☆☆☆~◇◇◇ △△△△△△△ 조성사업	□□건설주 ○○○	17.05.19	17.05.25 ~ 18.06.11	192,690	192,160	530	
○○○ □□□□□~ △△△△ ◇◇◇◇◇ ☆☆☆공사	◎◎건설주 ▽▽▽	17.12.12	17.12.18 ~ 18.12.31	242,888	240,343	2,545	

### 【위법부당내용】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6. 경비에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은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관 4. 재료비에는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운임 등)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골재의(구매조건 : 공장상차도)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경비항목으로 계상하여 원가계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 그런데, 2017. 05. 19. □□건설(주)○○○와 계약하여 완료된 「☆☆☆~◇◇◇ △△△△△△△조성사업」의 공사원가 계산 시 전석 운반비를 경비항목이 아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각 항목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가계산을 함으로써 530천원이 과다 설계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 ▶ 또한 2017. 12. 12. ◎◎건설(주)▽▽▽와 계약하여 추진중인 「○○○ □□□□□~ △△△△ ◇◇◇◇ ☆☆☆공사」의 공사원가 계산 시 골재 운반비를 경비항목이 아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각 항목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가계산을 함으로써 2,545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 △△△△△△△조성사업」과 「○○○ □□□□□~ △△△△ ◇◇◇◇ ☆☆☆공사」의 공사원가 계산시 운반비 항목을 잘못 산정하여 과잉 지급된 금액 3,075,00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9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난계국악단원 연주활동수당 지급 부적정

### 【현 황】

○ 연주활동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사용내역

일시	공연명	상근 난계국악단원		연주활동 수당 지급액 (원)	대체휴무 사용여부	대체휴무 사용일	대체휴무 사유	비고
		구분	성명					
계				420,000	사용 13 미사용 1	부적정 지급액 390,000원		
2018.4.1 6.(월)	-	-	-	30,000	부	-	-	-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	30,000	여	2018-04-17(1일)	휴무일공연	중복

※ 국악문화체육과 제출자료(대체휴무사용내역 및 수당지급 내역) 재구성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민의 정서 함양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영동군 난계국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악단의 일반단원은 상근단원이며 단원은 단장 및 상임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연습과 공연 등을 행한다.
- 『영동군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복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단원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이며, 단장은 공연,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일 및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단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은 국악문화체육과장이 한다. 제8조에 따르면,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근단원에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별표」 연습수당 및 연주활동수당 지급표에 따르면 상근단원에게 지급되는 연주활동수당은 회당 30,000원 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과 영동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조는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국악단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다. 동 협약 제35조는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거나 공연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서 제40조는 상근단원의 연주활동수당을 회당 3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영동군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14명은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휴무일에 ○○○○○에서 연주공연을 실시하였고, 단원 ☆☆☆ 외 12명은 4월 17일 휴무일 공연을 사유로 대체휴무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4월 난계국악단원 연주활동(각종 공연) 수당 지급”을 하면서 대체휴무 사용자에게는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단원 ☆☆☆ 외 12명에게 총 39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 외 12명에게 잘못 지급된 연주활동수당 390,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계국악단원 수당지급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99,84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현 황】

○ 붙임참조

【위법부당사항】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0%), 지방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의 필요경비율

기간	필요경비율	원천징수 세율	과세최저한
~ 2018. 3월까지	80%	4.4%	250,000원
2018. 4월 ~ 12월	70%	6.6%	166,666원
2019년 이후	60%	8.8%	125,000원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제◎◎회 회장기 ○○○○ △△대회 대회운영임원비로 ☆☆☆외 32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 징수한 이후 정산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 ▶ 제◎◎회 회장기 ○○○○ △△대회 ☆☆☆ 외 12명, 2016년 □□□□□□ ◇◇◇◇◇ ▲▲▲ 외 5명, 2017년 □□□□□□ ◇◇◇◇◇ ★★ ★ 외 4명의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의 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 검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제◎◎회 회장기 ○○○○ △△대회 ☆☆☆ 외 12명, 2016년 □□□□□□ ◇◇◇◇◇ ▲▲▲ 외 5명, 2017년 □□□□□□ ◇◇◇◇◇ ★★ ★ 외 4명의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의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499,840원을 징수하기 바라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특별)징수와 보조금 정산검사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일상경비 집행의뢰 소홀

【현 황】

지급명령 번호	지급일	지출과목		적 요	지급처	지출금액 (원)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2017-70	2017.2.6.	문화예술사업	사무관리비	-	-	9,996,800	
2017-446	2017.6.3.	관광홍보및관광지관리	사무관리비	-	-	5,500,000	
2018-588	2018.6.25.	국악체험촌운영	사무관리비	-	-	8,500,000	
2018-589	2018.6.25.	국악체험촌운영	사무관리비	-	-	8,500,000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과 재정사항 합의를 거치고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무과장은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그럼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 ★★★★★ ★★ 제작 구입” 외 3건에 대해 1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일상경비이므로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의뢰하여 함에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체결하여 구입 지출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일상경비중 1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과장에게 집행을 의뢰하여 구매하는 등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

【현 황】

○ 불임참조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2015년 ★★ ▲▲▲▲▲▲▲ ▲◆◆◆◆ □□□□, 2015 ◎◎◎ △△△△△△ 운영, 제◎회 ☆☆☆☆☆ ☆ ◆◆◆대회, 2015 □□ □□ ▲▲▲▲▲ ☆☆☆☆ 대회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액을 확정하였고, 2016 ▲▲▲▲ 편찬사업 외 33건의

경우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최대 8개월이 지나 정산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정산보고서가 제출되고 최대 4개월이 지나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